

<分析資料>



原價의本質

李正浩

(서울大 經營大 副教授)

1. 原價의一般概念

대부분의 數學이나 自然科學 分野에서는 모든 與件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諸概念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¹⁾ 그러나 대부분의 會計關係의 定義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란 거의 없다. 會計關係의 諸用語를 定義하는데 많은 混亂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있는 일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原價(cost)에 관한 概念은 여러가지 目的에 따라 상이한 概念을 갖는 用語로서 알려져 있다.

原價의 概念은 原價를 파악하는 目的에 따른 것으로서 原價計算 目的의 相違에 따라서 相異한 原價概念을 갖는다. 그리하여 일찌기 크라크(J.M. Clark)는 그의 著書 *Studies in the Economics of Overhead Costs*에서 「相異한 目的에 따라 相異한 原價」(different costs for different purposes)라는 말로서 原價의 計算은 測定目的에 依存한다는 것을 指摘한 바 있다.²⁾ 이와 같은 意味에서 原價에 관한一般的인 定義를 내리기를 꺼려했고 그에 따라 美國會計學敎科書에서도 原價에 대한 定義는 대부분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모든 原價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一般概念은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美國會計學會(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와 獨逸의 몇몇

學者들이 比較的 整理된 原價概念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이들이 定義한 概念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原價의 一般concept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美國會計學會의 原價concept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事實은 美國에 있어서의 原價會計의 發展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美國會計學會의 原價concept 및 基準委員會(Committee on Cost Concepts and Standards)와 同委員會에 대신하여 1957年 1月에 設置된 管理會計委員會(Committee on Management Accounting)에서 여러차례에 걸친 報告書(Statement)가 있다고 하는 점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美國會計學會의 1951年度 原價concept 및 基準委員會에서는 “原價란 特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發生하였다던가 또는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犠牲을 貨幣價值의으로 測定한 것”(Cost is foregoing, measured in monetary terms, incurred or potentially to be incurred to achieve a specific objective)이라고 定義하고 있다.³⁾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犠牲(foregoing)이란 말은 墓失되었다던가 또는 墓失될 것으로 期待되는 價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經濟價值의 墓失을 意味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同委員會의 1955年度 報告書에 의하면 原價란 “有形・無形의 經濟財를 取得하고 또 만들 어내는 경우에 目的意識의으로 抛棄한 또는 抛

1) Robert N. Anthnoy, *Management Accounting*,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 1970, p. 8.

2) J.M. Clark, *Studies in the Economics of Overhead Cos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3, p. 175.

3)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52, p. 175.

棄할 것으로 期待되는 價值(value purposefully released or to be released)의 評價額(measured amount)"이라고 하고 있다.⁴⁾ 이곳에서 "拋棄한 또는 拋棄할 것으로 期待되는 價值"란 支出된 貨幣評價額뿐만 아니라 貨幣犠牲額以外의 것도 貨幣의 評價額으로 測定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하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 美國會計學會의 原價概念 및 基準委員會의 定義를 보면 原價라는 것을 결국은 "價値物의 合目的的인 犠牲(sacrifice, foregoing or release)의 貨幣的 評價額"이라는 범주안에서 定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獨逸의 경우는 美國에 앞서 권위있는 原價概念이 1930年代 初期에 定義된 바 있다. 獨逸 經濟學界的 代表的인 理論家 슈마렌바하(E. Schmalenbach)에 의하면 "原價라고 하는 것은 一定의 紿付(Leistung)를 위해서 消費된 財貨의 原價計算上 評價되는 價值"라고 定義하고 있다.⁵⁾

이 定義에 나타난 特徵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으로 要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財貨消費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두가 原價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紿付와 관련하여 나타난 財貨消費만이 原價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紿付를 위하여 財貨가 消費되었다 하더라도 原價計算에서 除外되어 이에 金額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原價計算에서는 紿付란 用語가 종종 사용된다. 이 말은 獨語의 Leistung을 日本 사람들이 紿付라고 번역하여 오늘날에는 會計學의 전문용어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은 法學에서 사용되는 紿付나 反對給付와는 다른 뜻을 갖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原價會計에서 말하는 紿付라고 하면 이것은 經營에 의하여 創出되는 財貨 또는 用役(good and services)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工場에서는 一定의 目的을 가지고 여러가지 材料, 人間의 勞動力, 機械力, 電力 기타의 經濟價值를 매일같이 消費하고 있다. 그 結果 製品이나 半製品, 部品등이 이

루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經營의 紿付인 것이다. 그러나 紿付라는 말은 위에서 例로든 生產의 경우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原材料를 購入한다던가 製品을 配給하고 販賣하는데도 적용되고 또한 經營者가 수행하는 會社全般에 관한 管理過程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紿付에 해당하는 말을 英語에서 굳이 찾는다면 이는 goods, service, output, performance등의 複合的 意味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위에서 考察한 諸原價concept을 종합해 볼 때 原價란 "一定의 紿付와 관련하여 犠牲되었다던가 또는 犠牲될 것으로 期待되는 財貨나 用役(經濟價值)을 貨幣價值의으로 表示한 것이다"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論議한 原價에 관한 諸見解를 要約하면 原價는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原價는 經濟價值의 犠牲이다. 原價는 經營活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犠牲價值이다. 여기에서 經濟價值라고 하는 것은 有形·無形의 財貨나 用役으로서 貨幣價值의으로 表示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有用한 財貨나 用役이라도 이것이 貨幣量으로서 表示할 수 없는 것이라면 原價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犠牲이란 이것을 특정 用途에 사용할 경우에 다른 用途에는 기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犠牲되었다던가 또는 犠牲될 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란 過去에 있어서 犠牲되었다던가 또는 現在에 있어서 犠牲되고 있다던가 또는 未來에 있어서 犠牲될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써만이 原價會計의 範圍를 過去原價(historical cost), 現在原價(current cost) 그리고 未來原價(future cost)에 대한 論議를 할 수 있는 根據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犠牲되는 經濟價值란 대부분 支出의 結果 획득되는 것으로 原價는 이 점에서 支出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4)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56, pp. 183-184.

5) E. Schmalenbach, *Selbstkostenrechnung und Preispolitik*, 1934, SS. 112-3, 土岐政藏譯 下卷14頁

6) 蘇眞德教授는 紿付에 該當하는 말은 英語로서 output, performance로 表現하고 있다. 蘇眞德教授著. 原價會計, 博英社刊, 1975, p. 1 및 p. 41.

(2) 原價는 一定의 給付와 관련하여 파악된 經濟價值이다. 본래 給付(Leistung)라는 말은 經濟價值를 남에게 供給交付하는 行爲를 뜻한다.

그러나 原價會計上의 給付의 意味는 이외는 달리 經營이 만들어내는 財貨나 用役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그것을 完成品과 같은 最終給付 뿐만 아니라 在工品이라든가 補助部門에서 創出한 用役도 포함하는 概念인 것이다. 要約해서 말하면 原價란 一定의 期間에 대해서 把握한 것이 아니라. 一定의 給付와 관련하여 파악된 것이다.

(3) 原價는 經營目的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企業本來의 經營活動인 購買, 製造 및 販賣 등 諸般活動과 관련하여 犠牲되는 經濟原價가 原價이기 때문에 본래의 經營活動以外의 活動, 例컨대 財務活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諸費用은 原則的으로 原價를 構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原原則의 으로」라는 말은 財務費用은 여하한 경우에도 原價를 構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特殊原價調查와 같은 경우에는 原價에 算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原價概念은 目的의 概念이란 것이다.

(4) 原價는 正常의 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正常의 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正常의 이 아닌 것이냐에 대한 論議가 있을 수 있다. 正常의 意味는 보통 「通常의 인」 또는 「經常의 인」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經營活動과 관련하여 經濟價值가 減少한 것이라 하더라도 異常한 狀態下에서, 例컨대 水害나 스트라이크 등에 의해서 나타난 經濟價值의 犠牲을 原價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說明한 原價의 5가지 特徵은 原價計算制度下에서의 原價構成力의 與否를 判斷하는立場에서 原價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原價는 반드시 財貨나 用役을 生產提供하는 이외에 財產을 取得한다던가 株式을 發行한다던가 또는 심지어 負債가 발생하는 경우등

의 여러가지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때 美國公認會計士會(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에서 定義한 다음과 같은 原價概念은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原價라고 하는 것은 受取하였다던가 또는 受取할 것으로 期待되는 財貨나 用役에 대해서 支出한 現金이나, 移轉한 財產, 發行한 株式, 提供한 用役, 또는 発生한 負債의 貨幣的 評價額을 말한다”(Cost is the amount, measured in money, of cash expended or other property transferred, capital stock issued, services performed, on a liability incurred, in consideration of goods or services received or to be received)⁷⁾ 이와 같이 볼때는 原價는 다른 資產이나 財貨 또는 用役과 交換으로 現金의 支出(outlay of cost of cash), 他資產의 移轉(transfer of other assets), 用役의 提供(perform services), 株式의 發行(issue capital stock)을 貨幣額으로 測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原價와 費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原價는 一定의 給付와 관련하여 犠牲되었다던가 또는 犠牲될 것으로 기대되는 財貨나 用役을 貨幣額으로 表示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費用(expense)은 收益(revenue)을 얻기 위해서 나타나는 財貨 및 用役의 使用을 貨幣價值의 으로 表示한 것이다.⁸⁾ 그러므로 原價는 給付와 교환으로 이루어진 財貨・用役의 貨幣的 評價額인데 반해서 費用은 收益과 對應되는 財貨・用役 使用額의 貨幣的 評價額이라고 볼 수 있다.

原價와 費用과의 관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페이톤(W.A. Paton)・리틀頓(A.C. Littleton)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이들에 의하면 費用은 다음과 같은 3段階를 거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⁹⁾

7) AICPA,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4.

8)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74, pp. .

9) W.A. Paton and A.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AA Monograph No. 3, 1940, p. 25.

第1段階：原價의 認識・測定・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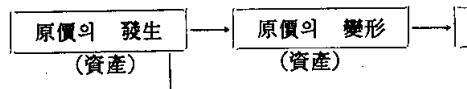
第2段階：經營活動에 따른 原價의 追跡 및 再分類。

第3段階：當期 또는 次期 이후의 期間收益에의 最終的 對應。

「페이톤」・「리틀톤」이 說明하고 있는 費用이나 타나기까지의 3段階는, 우선 資產으로서 原價를 認識・測定・分類하고 후에 經營活動이 진행됨에 따라 原價의 變形과정을 거쳐 最終的으로 收益에 對應하여 비로소 費用이 認識・測定된다.

「페이톤」・「리틀톤」은 資產의 本質問題를 구별하지 않고¹⁰⁾ 資產을 原價 즉, 그들이 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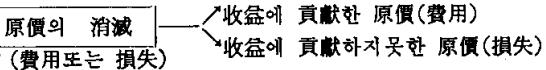
第1段階



第2段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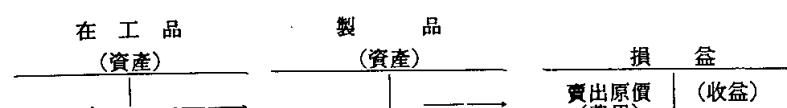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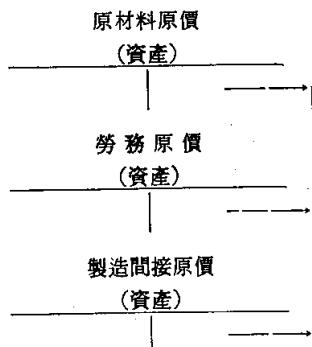
價格總計(price aggregates)로서 理解하고 있다. (第1段階). 여하튼 原價(資產)가 결정되면 이 原價는 經營活動에 따라 企業內部에서 移動을 하거나(第2段階), 아니면 收益에 對應되어 消滅해버리거나 또는 상실하게 된다(第3段階). 第2段階의 原價追跡過程이란, 결국 原價가 費用으로 되기 이전에 다른 資產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變形된 原價가 收益을 획득하는 過程에서 貢獻을 한 것이라면 이 때 消滅된 原價가 費用이 되며, 收益에 貢獻하지 못한채 그대로 상실된 경우에는 損失이 된다.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第3段階



製造企業의 예를 들어 이를 說明해 보자. 製造企業에서 原材料를 企業外部로부터 購入하여 이를 製品으로 만들어 외부에 販賣하고 있는 경우 原材料를 購入하면 위의 第1段階에 해당하는 原價가 발생한다. 여기서 原價란 企業에 들어오는 어떤 價值物과의 交換으로, 그 企業의 現金 또는 기타 資產을 支出하여 消費한 額, 發行한 株式額, 提供한 用役額, 또는 그 企業이 跑어지게 된 負債의 貨幣額을 말한다.¹¹⁾ 그러므로 現金・當座預金・外上債權 등을 제외한 모든 資產은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 取得된 것으로서, 위 예에서 原材料의 購入은 이것과 交換으로 取得

한 原價로 表示된 在庫品(inventories) 또는 原材料(raw materials)란 資產으로 倉庫品 또는 原材料가 製造企業의 目的에 따라 生產工程에 投入된다고 할때 原材料는 다른 形태의 資產, 즉 在工品(goods in process, work in process)으로 변형되게 된다. 이것은 原價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原價가 다른 形태로 변형된(cost transformation)在工品의 일부인 原材料原價(raw material cost)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위에서 말하는 第2段階의 原價의 變形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使用되고 있는 材料費・勞務費・製造間接費 등의 用語에 붙여지고 있는



10) 李正浩, 「資產의 本質과 그 測定」,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營研究所, 『經營實務』第5卷 3號 1971年
참조.

11) AICPA,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4.

‘費’는 原價의 그릇된 表記法으로서, 엄밀하게는 材料原價·勞務原價·製造間接原價 등으로 表現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原材料는 在工品의 과정을 거쳐 製品(finished goods)의 일부를 構成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까지 消滅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原價(資產)의 變形이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原價(資產)가 費用으로 되는 것은 製品이나 生產이 완료되지 않는 半製品을 賣却한다든가, 또는 製品을 賣却하여 收益獲得에 貢獻한 原價分(utilized costs)만인 것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計定으로 圖示하면 앞페이지와 같다.

여기에서 또 하나 유의하여야 할 것은 損益計算에서 收益에 對應되는 經濟價值의 使用 및 消費額은 賣出原價로 表記하기 보다는 賣出費用으로 表記하는 것이 보다 正確한 뜻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한편, 保管중에 있는原材料나 生產工程에 있는 在工品 또는 완성된 製品등이 火災나 盜難에 의하여 損失된 경우에는 收益을 獲得하는데 아무런 寄與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損失된 原價(lost costs)로서 損失(loss)이 된다. 이와 같이 原價의 消滅이 收益에 공헌하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費用과 損失이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나 實際問題로서 이의 判斷基準이 애매하므로 實務界에서는 이兩者를 包括하여 ‘損費’란 用語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原價가 消滅되지 않고 그대로 殘存하고 있는部分(cost residue)은 다음의 收益을 위해서 費用化될 것을 待機하고 있는 原價로서 資產(assets)이 된다. 이와 같이 보면 資產이란 未消費原價라고 할 수 있다. 「슈마렌바흐」(E. Schmalenbach)나 「페이톤」·「리틀톤」과 같은 費用動態論者들은 資產·原價

費用의 諸關係를 위하여 설명한 式으로 이해하고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 原價와 費用과의 관계를 會計制度의 측면에서 보자. 制度로서의 原價計算은 財務會計와 有機的인 결합관계를 갖고 있다.

原價나 費用은 다같이 經濟價值의 消費 또는 犠牲이란 점에서는 서로 다른 바가 없지만 原價는 財貨나 用役의 生產販賣와 관련되어, 즉 紙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데 대해서 費用은 收益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間接적으로 발생하는 經濟價值의 使用내지는 犠牲이란 점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보면, 예로서 經營에서 目的으로 하고 있는 財貨를 生產하기 위해서 나타난原材料의 消費는 原價인 同時に 收益에 해당하는 賣出額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價值의 犠牲이므로 費用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原材料가 消費된 것이 모두 財務會計上의 費用이 되기 위해서는原材料를 사용하여 生產한 財貨가 모두 販賣되어야 한다. 만일 生產된 財貨가 모두 販賣되지 않고 殘額이 있으면 이것은 費用이 아니고 原價로서 파악된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視點에서 볼 때 原價와 費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그룹으로 分류할 수가 있다.

1) 基礎原價(Grundkosten): 이것은 原價計算上의 原價인 동시에 損益計算에 있어서도 費用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經濟價值를 消費한 경우의 大部分은 이 분류에 속한다. 製品을 製造하기 위하여原材料, 勞動力諸用役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그 價額은 그 대부분이 原價인 동시에 損益計算상으로는 賣出原價라는 費用이 된다.

2) 目的費用(Zweckaufwand): 이것은 損益計

原價와 費用과의 관계

原價計算上의 原價.....	原價이나 費用이 아닌 것 (附加原價)	原價인 동시에 費用인 것 (基礎原價)
損益計算上의 原價.....	費用인 동시에 原價인 것 (目的費用)	費用이나 原價는 아닌 것 (中性費用)

12) Charles T. Horngren, *Cost Accounting: A Managerial Emphasi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2, p. 32.

算書상의 費用인 동시에 原價計算上으로도 原價로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基礎原價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經濟價值의 消費를 原價計算의 입장에서 파악하느냐 아니면 損益計算의 입장에서 파악하느냐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附加原價(Zusatzkosten): 이것은 原價計算上으로는 原價로는 취급되나 損益計算上으로 費用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附加原價의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個人企業에 있어서 企業主의 報酬

(2) 企業所有土地에 대한 計算地代

위와 같은 附加原價는 現金의 支出을 수반하지 않는 原價이므로 簿記의 处理를 할 수 없으므로 損益計算上으로는 費用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4) 中性費用(neutraler Aufwand): 이것은 損益計算上으로는 費用이나 原價計算上으로는 原價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中性費用에 속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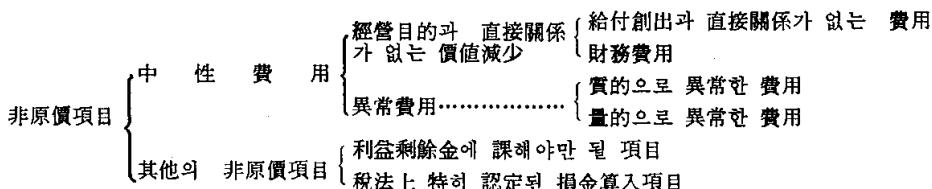
(1) 主로 金融上의 費用 및 遊休設備의 維持를 其他 製品製造 및 販賣나 經營全般의 管理와는 관계가 없는 費用

(2) 臨時 또는 異常損失

3. 非原價項目

制度的 原價計算에서는 中性費用 이외에도 原價에 算入되지 않는 項目이 있다. 이들을 총칭하여 非原價項目 또는 原價外項目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非原價項目은 본래 財務會計에서 取扱하여야 할 것이다. 原價計算制度下에서 原價性을 갖는 것과 原價性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非原價項目을 分類表示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非原價項目을 분류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여기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어떤 項目



이 原價性을 갖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原價計算의 目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코一律의 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다. 위의 非原價項目表는 制度의 原價計算을 전제로 하여 분류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目的을 가지고 있는 原價計算, 예컨대 設備政策을 위한 原價計算(特殊原價調査에 해당함)에서는 財務費用도 原價計算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에서 분류한 非原價項目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로 한다.

1) 經營目的과 직접관련이 없는 價值減少

(1) 다음과 같은 資產에 관한 減價償却費, 管理費, 租稅等의 項目

① 投資資產인 不動產, 有價證券, 貸付金等

② 未稼動의 固定資產

③ 長期間 休止상태에 있는 設備

④ 其他 經營目的과 관계가 없는 資產

(2) 寄付金등으로 經營目的과 관계가 없는 支出

(3) 支給利子, 割引料, 社債發行費償却, 株式發行費償却, 開業費償却, 支給保證金등과 같은 財務費用.

(4) 有價證券의 評價損 및 賣却損

2) 異常한 狀態에서 나타나는 價值減少額 偶發事故등에 의한 異常損失은 原價性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의 있다.

① 異常한 工損, 減損, 在庫減耗등

② 火災, 震災, 風水害, 盜難, 爭議등 偶發的事故에 의한 損失

③ 豐期하지 않은 陳腐化등에 의하여 固定資產에 현저한 減價를 일으킨 경우의 臨時償却費

④ 延滯金, 違約金, 罰課金, 損害賠償金

⑤ 偶發債務損失

⑥ 訴訟費

13) 이것은 日本의 原價計算基準에 나타난 바에 따라 分類한 것이다.

- ⑦ 臨時多額의 退職手當
- ⑧ 固定資產賣却損 및 除却損.
- ⑨ 異常한 貸倒損失
- 3) 稅法上 特히 認定되어 있는 損金算入項目
 - ① 價格變動準備金移越額
 - ② 稅法上 보통의 債却範圍額을 超過하는 金額
- 4) 其他 利益剩餘金에 課하여야 할 項目
 - ① 配當金
 - ② 任員償與金
 - ③ 任意積立金 移越額
 - ④ 建設利子償却額
- 5) 利子의 原價性 與否에 관한 論議。

初期의 原價計算에서는 利子는 당연히 原價要素로 認定되었다. 그러나 1921年 NACA(National Association of Cost Accountants의 略字 이것은 1957년에 NAA=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로 改稱되었다)가 이를 論題로 취급한 이후부터 利子의 原價性을 둘러싼 장기간에 걸친 활발한 論議가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利子의 原價性을 둘러싼 爭點을 이곳에 要約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利子의 原價性을 肯定하는 사람은 設備 내지는 生產方法을 比較하는 경우, 部品을 自製할 것인가 또는 外注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경우, 在庫品의 經濟性을 檢討하는 경우, 製品賣價를 決定하는 경우에 있어서 利子가 重要的 要素가 된다는 점을 들어 利子의 原價性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土地賃借料와 利子는 統一的으로 취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資本은 經濟學上 生產要素로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근거에서 利子의 原價性을 주장하는 論據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 利子의 原價性을 否定하는 사람은 上述한 諸例는 特殊原價調查의 問題로서 制度의 原價計算上에서 利子를 原價에 算入한다고 하는 것은 技術的으로나 理論的으로나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借入資

本에 대한 利子를 原價에 算入하게 되면 당연히自己資本에 대한 利子도 算入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利子率을 얼마로 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固定資產에 投下된 資本에 대한 利子를 計算한다고 하면 당연히 流動資產에 투한된 資本에 대한 利子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製造部門補助部門에 있는 流動資產의 金額을 確定하여 利子를 考慮한 計算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計算技術의 측면에서의 의문이 남게 된다. 또한 利子는 財務活動과 관련된 費用이기 때문에 이것을 本來의 經營活動의 결과인 原價에 산입하게 되면 經營活動의 業績測定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現代企業에서는 資本과 經營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配當金과 利子가 性格上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利子는 配當金에 準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위의 여러가지 理由로 말미암아 制度의 原價計算의 입장에서는 利子의 原價性을 認定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通說로 되고 있다.

4. 附加原價

위에서 說明한 非原價項目과는 反對로 費用(支出)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原價에는 算入되는項目이 있다. 이것을 附加原價(imputed cost, Zusatzkosten)라고 한다. 附加原價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外部로부터 無償으로 供與 또는 貸與받은 財貨 또는 用役의 推算消費額
- (2) 債却이 끝난 固定資產을 經營目的을 위해 사용한 경우의 適正減價償却費
- (3) 個人企業에 있어서 企業家賃金
- (4) 自家所有 家屋의 計算집세